

대경대학교 관사 관리 규정

제정 2016. 11. 9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가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관사의 범위) ① 이 규정에서 관사라 함은 대경대학교 재산으로서 대경대학교 교직원이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건물·대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.

② 대경대학교 교직원이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의 건물·대지 및 그 부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도 관사로 간주한다.

제3조(관리기관) 관사의 관리운영은 대경대학교 총무처에서 담당한다.

제4조(사용자 자격) 관사의 사용자는 대경대학교 교직원으로 한다.

제5조(사용기간) 관사의 사용기간은 교직원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퇴사) 다음 사유 발생 시 사용자에게 퇴거 명령을 하여야 하며, 이 경우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.

1. 1년 이상 관사를 비울경우
2. 이 규정이 정한 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
3. 기타 총장이 퇴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제7조(관리비의 부담) 관사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은 별표1과 같다.

제8조(사용자의 책임과 임무)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내부시설의 구조변경 금지
2. 소음 및 위험물 사용의 금지
3. 기타 관사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관사운영경비 구분표

구 분	관사별	관사
경비구분	예 시	
1. 재산의 유지 관리	가. 건물의 개축 및 증축	기관부담
	나.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	
	다. 기계기구의 설치(보일러, 에어컨, 싱크대 등)	
	라. 통신시설, 수도, 조경 사업	
	마. 건물의 유지보수	
	바. 화재보험료	
2. 기본 장식품 유지비	가. 비품구입비(침대, 냉장고, 텔레비전, 옷장, 책상, 컴퓨터 등 생활 기본비품으로서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품)	기관부담
	나. 비품수선비	기관부담
3. 경상비	가. 공공요금(전기료, 전화료, 수도료, 오물수거료, 시정료, 방법비 등)	기관부담
	나. 난방경비(보일러 운영비 및 난방경비)	기관부담
	다. 일반관리경비	기관부담